### I. 배경

『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변경 안내 ('23. 7. 1. 시행)

#### Ⅱ. 적용대상

○ 2023. 7. 1. 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부터 적용 ※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는 현행 기준으로 적용

#### Ⅲ. 건설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

○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개정 전후 비교

항목		현행	변경	설치대상 공사의 종류와 규모	
1	소화기	0	0	☞ 신축, 증축,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	
2	간이소화장치	0	0	☞ 연면적 3,000 m²이상 ☞ 바닥면적 600m² 이상의 지하층, 무창층	
3	비상경보장치	0	0	☞ 연면적 400m² 이상 ☞ 바닥면적 150 m²이상의 지하층, 무창층	
4	간이피난 유도선	0	0		
5	가스누설경보기	-	0	☞ 바닥면적 150㎡ 이상의 지하층, 무창층	
6	비상조명등	<del>-</del>	0		
7	방화포	-	0	☞ 용접/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	

-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
  - 간이소화장치: 대형소화기 6개, 옥내소화전설비
  - 비상경보장치: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
  - 간이피난유도선: 피난유도선, 피난구유도등,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

## IV. 착안사항

- 신규 사업 수주 제안 시 신규품목에 대한 비용 내역 반영 필요
- 가스누설경보기, 방화포, 비상조명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금지
  - \* 타법 의무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불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3호)
  - \* 화재위험작업에 배치하는 소화기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

점부: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비교 1부. 끝.

# [첨부]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비교

항목		현행 ('23. 7. 1. 이전 허가신고)	변경 ('23. 7. 1. 이후 허가신고)
1	소화기	- 각층마다 소화기 2개 - 화재위험작업 소화기2개+대형1개	- 각층 계단실 출입구 소화기 2개 - 화재위험작업 소화기2개+대형1개, - 소화기 설치장소 축광식 표지 부착
2	간이소화장치	-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- 방수압력 0.1MB, 방수량 65L/min,수원 20분 용량	-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-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상시 배치 - 방수압력 0.1세, 방수량 65L/min - 수원 20분 용량
3	비상경보장치	- 화재위험작업 지점 5m 이내 설치 - 비상벨, 휴대용확성기	-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설치 - 비상벨 음량 100db이상(1m이내) - 비상전원 확보(20분 이상)
4	간이피난 유도선	-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- 상시 점등	- 각 층의 출입구로부터 건물내부로 10m 이상 설치(구획실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출입구까지 연속해서 설치) - 상시 점등(녹색계열 광원)
5	가스누설경보기	[신설]	-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(구획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 마다)에 바닥 으로부터의 높이가 30cm 이하인 장 소에 설치
6	비상조명등	[신설]	-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지상1층 또 는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 에 설치, 20분 이상 비상전원, 비상 경보장치와 연동
7	방화포	[신설]	- 용접·용단 작업 시 11m 이내에 가연 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 포로 도포